

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
북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8.

(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3차 북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가. 제안설명: 도시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,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나. 옥외광고심의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(안 제13조)

1)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20일 이내 처리, 필요 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

다.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(안 제28조)

라.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규정 신설(안 제29조)

1)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(500만원 이하)를 부과

마. 상위법령 변경조항 반영, 관계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옥외광고물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8. 12. ~ 2021.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,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처리 서류첨부 제외 대상 목록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고,
-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을 고층 대형광고물로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6조 및 안 제26조에서는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제명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「옥외광고물법시행령」 1)의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장 등 선임 절차를 구체화 하였고,
- 안 제1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사항에서는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고,
같은 조 제5항에서는 「옥외광고물법」 2) 및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3)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심의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,
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고, 같은 조 제3항에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,
- 안 제29조 별표7에서는 「옥외광고물법」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, 그 외에 이행강제금, 수수료, 과태료 계산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재정

1) [붙임 2] 참조

2) [붙임 1] 참조

3) [붙임 3] 참조

비하였습니다.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 연임제한 및 이의신청 관련 내용 등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며,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서류제출 대상을 완화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[붙임 1] 「옥외광고물법」

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 1. 6., 2020. 6. 9.>

1.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- 1의2.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·표시한 자
- 1의3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[붙임 2] 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

제27조(주민협의회의 운영)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55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8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5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의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	
가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		<u>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</u>
나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		<u>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</u>
다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		<u>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</u>

[붙임 3]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1조(처리기간의 연장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.